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의견표명]

□ 민원 제목 : 0초등학교 효령천 난간 및 계단 설치 요청

□ 신청 취지

- 광주광역시 0구 소재 0초등학교에 인접한 하천(00천)의 난간대가 허술하고 난간이 없는 곳도 있어서 떨어지거나 빠질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하천(00천)에서 생태계 관찰 학습활동 및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위한 청소활동 등을 위해 하천부지 내로 내려가기가 어려우니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계단과 난간대 설치를 요청함.

□ 피신청인 등의 주장

- 광주광역시 0구 소재 0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접 하천(00천)에서 생태계 관찰 학습활동 및 깨끗한 하천 만들기를 위하여 청소활동 등을 하고 있는데 난간대가 허술하고 난간이 없는 곳도 있어서 빠질 수 있으며 또한 학생들이 하천부지로 내려가기가 어려우니 쉽게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계단과 난간대를 설치해 주시어 재미있는 학습활동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초등학생들의 요청사항임.

□ 사실관계

- 시장산업과 : 난간설치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요청구간이 소하천 제방도로(농로)로 현재 추락방지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인근 통행인 및 차량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안전난간을(L=12m) 설치할 예정이다.
- 안전총괄과 : 해당 하천은 양안이 2m 정도의 석축으로 정비된 세천으로써 하천내 계단 설치 시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하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설치가 불가함.

□ 관계 법령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 나.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 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판단 및 결론

- 본 건 하천부지 내에 진입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은 하천부지 내 안전사고 우려 및 유수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시설물의 설치에 불가하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에 대하여 초등학교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사항이므로 학교장도 이해하고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더 이상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 난간대 설치 문제는 학교장과 담임교사는 필요 없다고 하지만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습 활동시 하천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관리청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통행인 및 차량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대 설

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 신청인의 민원사항 중 하천부지 내 진입계단 설치는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하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여 설치할 수 없다는 복구청의 의견과 우리 위원회의 현장확인 및 면담 결과에서도 민원인과 학교장께서도 계단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였으므로 본 사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다만 난간 설치 요청사항은 학교측에서 필요없다 하더라도 통행인 및 차량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난간대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의견 표명 합니다.